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211
----------	------

2021년 3월 5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2월 5일 조상호 의원 외 11명
2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9일
3. 상정일자 :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1년 2월 26일 상정·의결(수정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조상호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사회보장위원회는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음. 하지만 소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상 규정하고 있지 않아, 소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제시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함.
-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와 서울시민복지기준,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을 상설소위원회로 규정하여, 소위원회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구체화 하여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및 평가와 서울시민복지기준,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등으로 규정함(안 제8조제1항제1~4호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

- 동 조례 개정안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제시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소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개정안의 주요내용

- 의안번호 2211 「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안 제8조 1항 1~4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임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	제8조(소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한다.
<신 설>	1.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
<신 설>	2. 서울시민복지기준

<p><신 설> <신 설>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	<p>3. <u>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</u> 4. <u>그 외에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-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위원회 세부 구성요건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및 평가, 서울시민복지기준,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을 추가하고 그 외에 소위원회는 위원장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함.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사회보장급여법’이라 함)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및 평가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2조(기능) 1, 3호에 명시되어 있고 서울시민복지기준도 6호에 포함 되는바, 소위원회 구성요건을 지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.

나.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사회보장위원회는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0조1)에 따라 국무총리

-
- 1) **제20조(사회보장위원회)**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 <개정 2020. 4. 7.>
1.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
 2.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
 3.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
 4.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
 5.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
 6.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

소속으로 사회보장에 따른 주요 시책을 심의·조정 하고 있음.

- 또한 시·도 사회보장위원회는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40조에 따라 시·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구성되어 있음.
- 시·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40조 ②에 따른 시·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사회보장조사 및 관련 지표,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사회보장 추진에 관련한 중요사항 등을 소관하며 민·관이 협력하여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제40조(시·도사회보장위원회) 제40조(시·도사회보장위원회) ① 시·도지사는 시·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.

②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 <개정 2017. 3. 21.>

1. 시·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2. 시·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 3. 시·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 4. 시·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
 5.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)
 6.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의 연계·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(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)
 7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(중략)

7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

8.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

9.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

10.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

11.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

12.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

13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

2.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조정한 결과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·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.

- 서울시는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40조 및 「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‘조례’라 함)에 근거하여 1993년부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, 현재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(“20.10.26~22.10.25)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음.

〈표〉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주요 기능

-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·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·조정
-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사회보장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·자문
-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등

- 사회보장위원회는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 있음.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연구, 조정, 자문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, 소위원회별 10명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3~5개의 소위원회를 유동적으로 구성·운영하고 있음.
- 제13대 사회보장위원회는 기획, 사회보장계획 수립(평가),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, 서울시민복지기준2.0, 총 4개의 소위원회가 운영되었음.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의는 기획 소위원회가 제외되어, 총 3개의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 중 필요한 소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추가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. 하지만 현행 조례 상 소위원회의 세부 구성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.

<표> 제13대 및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현황

구분		주요안건	개최시기
13대	기획	- 사회보장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기획·검토 - 서울시 타위원회 및 단체와의 연계 협력	수시
	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(평가)	-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논의 -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모니터링 -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	수시
	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	-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후보 선정	수시
	서울시민복지 기준 2.0	- 서울시 시민복지기준에 대한 논의 및 안건 상정	수시
14대	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(평가)	-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논의 -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모니터링 -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	수시
	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	-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후보 선정	수시
	서울시민복지 기준 2.0	- 서울시 시민복지기준에 대한 논의 및 안건 상정	수시

다.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

-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는 「사회보장급여법」에 따라 2005년부터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,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의 추진기반을 마련해 왔음. 또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, 중앙정부의 지원 등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음.
-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 추진 사항을 평가하는 것임.
 - 지방자치단체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「사회보장급여법」에 명시하고 있음.

-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운영체계를 통하여 연차별 보고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지며, 지역 간 균형발전의 현황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.
- 서울시 「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(2019~2022)」의 정책 방향 키워드는 ‘사회적 돌봄’(지역인프라), 주거영역, 그리고 고용영역 등의 정책 강화임. 이에 따른 기본 방향은 대상·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실화이며, ‘내 삶을 바꾸는 서울복지’라는 목표 하에 4개의 추진전략과 58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되었음.



<표> 서울시 제4기(2019-2022)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 구성 체계

- ‘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’는 이행점검, 결과확인 등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인력풀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하고, 계획수행과정-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. 모니터링은 자체평가와 모니터링단 별도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며, 모니터링 운영 결과는 차년도 계획 및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됨.



<그림>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운영 절차도

라. 서울시민복지기준

- 서울시민복지기준 1.0은 2012년에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사회적 권 보장을 위한 5대 분야(소득, 주거, 돌봄, 건강, 교육)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, 최저기준과 적정 기준을 통한 시민복지 기준을 제시하였음. 이를 통해 지방정부 특성을 반영한 복지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, 타 광역자치단체로 확산되는 시발점을 제공하였음.
- 주요 추진성과로는 시민복지기준 5년 수립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,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시민 삶의 질을 제고했다는 점과, 복지사각지대의 요인이 되었던 부양의무자 단계 폐지 건인 등 중앙정부 정책을 견인하기도 하였음. 또한 시민 참여와 합의에 의한 시민복지기준 설정으로 ‘시민참여형 정책 협치모델’을 제시했다는 점임.

○ 2019년 서울시민복지기준 2.0이 5대 분야(소득, 주거, 돌봄, 건강, 교육)의 단일기준을 수립하였으며, 2020년까지 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12개 핵심전략 목표 및 18개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음.

-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 및 안건 상정되고 있음. 본 소위원회의 역할은 매년 서울시민 복지 기준 관련 사업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 점검하며, 행정·전문기관·시민(NGO) 보고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총괄, 서울시민복지기준 최종 평가보고 시민발표·시민공론화 기획 등을 수행하는 것임.

모든 서울시민의 복지권리가 생활속에서 실현되는 서울!!

■ 서울시민복지기준 2.0 (2019-2022)



<그림> 서울시민복지기준 2.0

마.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

-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3배수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.

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18조(임원)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2. 1. 26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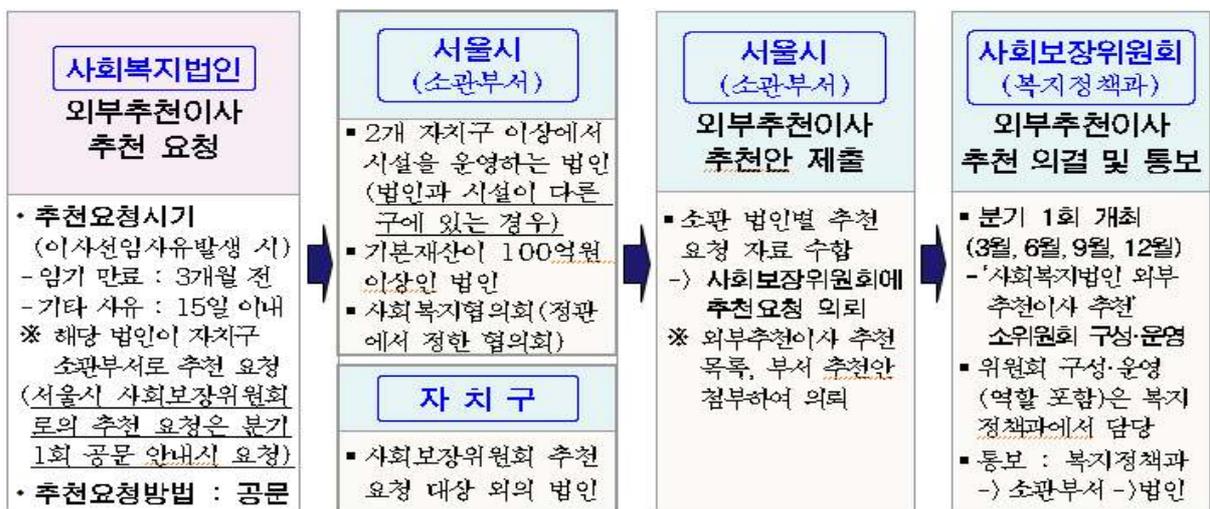
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(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. 26., 2017. 10. 24.>

1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

2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

(중략)

- 추천기관인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는 추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고,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후보군을 구성해야 함. 구성된 후보군에 따라 ‘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소위원회’를 구성·운영하여 최종적으로 외부추천이사 추천의결 및 통보를 하게 됨.



<그림>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절차

- ‘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소위원회’는 분기별 1회(3,6,9,12월)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른 임시회의를 실시하고 있음. 위원은 위촉직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였음. 본 소위원회의 기능은 외부 추천이사 후보군 구성 및 공고, 후보자 심의·추천결과를 통보하는 것임.

바.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: 원안동의

-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목적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이견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3

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제시하는 사항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쟁점사항은 없음.
- 서울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·자문 등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 있으며, 3~5개의 세부 소위원회가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음. 본 개정안은 소위원회의 세부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체계 확립 상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됨.
- 소위원회의 세부 구성요건으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, 서울시민복지기준, 사회복지

법인 외부이사 추천을 명시하여 조례해석의 명확성과 편의성을
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수정안 요지

1. 수정이유

○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, 일부 문구조정을 위해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안 주요 내용

○ 소위원회의 구성방안을 규정함(안 제8조제4호 수정)

VI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I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2211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2월 26일
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, 일부 문구조정을 위해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소위원회의 구성방안을 규정함(안 제8조제4호 수정)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제4호의 "그 외에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"를 "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사항"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<p>제8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<u>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	<p>제8조(소위원회) ① 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 <u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</u></p> <p><u>2. 서울시민복지기준</u></p> <p><u>3. 사회복지법인 외부 이사 추천</u></p> <p><u>4. 그 외에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8조(소위원회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</u></p> <p><u>2. 서울시민복지기준</u></p> <p><u>3. 사회복지법인 외부 이사 추천</u></p> <p><u>4.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사항</u>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”를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
2. 서울시민복지기준
3.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
4.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수 정 안
<p>제8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<u>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② ~ ⑥ (생 략)</p>	<p>제8조(소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</u></p> <p><u>2. 서울시민복지기준</u></p> <p><u>3.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</u></p> <p><u>4.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사항</u>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